

# 평창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0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3년 7월 일  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국가 및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인상하고자 함.
  - 현행 의무직공무원의 보수수준이 민간병원등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의 보수수준에 비해 열악하여 국가의 경우 `03. 7. 1자로 의료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월 30만원 인상

## 2. 주요골자

가. 특수업무수당(의료업무등의수당)지급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(인상)코자 함.  
(일률적 30만원 인상)

### ○ [별표 1] 개정

구분	전문의		일반의		비 고
	인상전	인상후	인상전	인상후	
병지	월791,000원	월1,091,000원	월710,000원	월1,010,000원	

### ○ [별표 2] 개정

구 분	가급		나급	
	인상전	인상후	인상전	인상후
5년 이상	월1,012,000원이하	월1,312,000원이하	월673,000원이하	월973,000원이하
4년 이상	월1,006,000원이하	월1,306,000원이하	월667,000원이하	월967,000원이하
3년 이상	월1,000,000원이하	월1,300,000원이하	월661,000원이하	월961,000원이하
2년 이상	월 995,000원이하	월1,295,000원이하	월656,000원이하	월956,000원이하
2년미만	월 989,000원이하	월1,289,000원이하	월650,000원이하	월950,000원이하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관계부처승인 : 해당없음

라. 입법예고 : 해당없음

마.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
바. 조례·규칙심의회 : 제11회 평창군조례·규칙심의회(2003. 7. 25)원안의결

## 평창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평창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 1] 및 [별표 2]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1]

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(제2조 관련)

구 분	전 문 의	일 반 의
병 지	월1,091,000원	월1,010,000원

※ 비고 :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자로 하며,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로 한다.

※ 급지의 구분

- 병지 : 영월, 평창, 정선, 철원, 화천, 양구, 인제, 고성, 양양군 (9개군)

[별표 2]

전임전문직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구분표(제2조 관련)

등급별 근무년수별	가 급	나 급
5년 이상	월1,312,000원이하	월973,000원이하
4년 이상	월1,306,000원이하	월967,000원이하
3년 이상	월1,300,000원이하	월961,000원이하
2년 이상	월1,295,000원이하	월956,000원이하
2년 미만	월1,289,000원이하	월950,000원이하

※ 비고 : 1. 근무년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.

2. 등급(가, 나)구분 :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3조 [별표]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개 정 안		
[별표 1]			[별표 1]		
구 분	전 문 의	일 반 의	구 분	전 문 의	일 반 의
병 지	월 791,000원	월 710,000원	병 지	월 1,091,000원	월 1,010,000원
[별표 2]			[별표 2]		
등급별 근무년수별	가 급	나 급	등급별 근무년수별	가 급	나 급
5년 이상	월 1,012,000원 이하	월 673,000원 이하	5년 이상	월 1,312,000원 이하	월 973,000원 이하
4년 이상	월 1,006,000원 이하	월 667,000원 이하	4년 이상	월 1,306,000원 이하	월 967,000원 이하
3년 이상	월 1,000,000원 이하	월 661,000원 이하	3년 이상	월 1,300,000원 이하	월 961,000원 이하
2년 이상	월 995,000원 이하	월 656,000원 이하	2년 이상	월 1,295,000원 이하	월 956,000원 이하
2년 미만	월 989,000원 이하	월 650,000원 이하	2년 미만	월 1,289,000원 이하	월 950,000원 이하

# 관 계 법 령

○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<제17894호, 2003.1.20>

[별표 9] 특수업무수당지급 구분표

수 당 명	지 급 대 상	지급 시기	지급액		비 고
의료업무 등의수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의무직군의 의무·약무·간호직렬 (의사·약사·간호사등)공무원</li> <li>·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</li> <li>· 전임계약직 및 별정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</li> </ul>	매월	대 상	지 급 액	'86.1월 신설
			의 사	조례에서 정하는액	
			약 사	70,000원	
			간호사 보건진료원	50,000원	
			의료기사	50,000원	